



特色있는 中國 産業財産權制度에 대한 考察(완)



강 경 찬
특허심판원 심판관

목 차

- I. 가까이 다가온 中國
- II. 中國을 알아야 하는 이유
- III. 中國의 産業財産權 현황
- IV. 中國 産業財産權 제도의 特色點

V. 맺는말

〈 고딕은이번호 명조는 지난 호 〉

12. 상표등록의 철회(撤銷)제도

중국 상표법상 상표등록의 철회는 우리법의 취소와 같은 면이 많으나 무효와 일부 같은 부분도 있다. 등록된 상표가 특정 철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이나 기업이 상표평심위원회에 등록상표의 철회제정을 신청할 수도 있으며 상표국은 어떠한 철회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상표등록을 철회할 수 있다.

중국 상표법에 제27조와 제30조 및 제31조에서 각각 등록상표의 철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27조 규정 철회사유는 오히려 우리 상표법상 무효사유에 가까운 것들이며, 제30조 및 제31조 규정 철회사유는 오히려 우리 상표법상 취소사유에 가까운 것들이라 할 수 있다.

1) 철회사유

상표법 제8조에 위반하는 상표나 사기 혹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된 상표는 그 등록을 철회하며, 상표 사용등을 잘못했을 때도 그 등록을 철회한다.

그 구체적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명칭, 국기, 군기, 훈장과 동일 유사한 것

- 외국의 국가명칭, 국기, 국장, 군기와 동일 유사한 것
- 정부간 국제조직의 깃발, 기장, 명칭과 동일 유사한 것
- 적십자(Red Cross) 또는 적신희(Red Crescent)의 표지, 명칭과 동일 유사한 것
- 해당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도형
- 상품의 품질, 주요원료, 효능, 용도, 중량, 수량 및 기타 특징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
- 특정 민족에 대한 차별성이 있는 것
- 과대 선전하거나 기만적인 성격이 있는 것
- 사회주의 도덕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민보건 위생에 나쁜 영향을 끼칠 염려가 있는 것
- 사실을 허위로 조작 또는 은폐하였거나 출원 서류등을 위조하여 등록받은 것
- 신의 성실원칙을 위반하고 복제, 모방, 번역 등의 방식으로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를 등록한 것
- 권한을 위임받지 않고 대리인의 명의로 피대리인의 상표를 등록한 것
- 타인의 합법적인 상표권을 침범하여 등록한 것
-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등록한 것
- 등록상표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 등록상표를 양도시 일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 연속 3년간 등록상표의 사용을 중단하는 경우
- 등록상표가 조잡하게 제조된 상품에 사용되거나 품질이 뒤떨어진 상품에 사용됨으로 수요자를 기만하는 경우

2) 철회절차

상표국에서는 상표법 제27조의 철회이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자체적으로 그 등록상표의 철회결정을 할 수 있다. 상표국이 내린 등록철회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철회결정통지를 받

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표평심위원회에 재심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이나 기업도 누구든지 상표평심위원회에 그 등록상표의 철회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상표평심위원회에 등록상표철회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책부당상표철회신청서(注册不堂商標撤銷裁定申請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표평심위원회는 최종결정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상표국으로 이송처리케 한다.

철회당한 부당등록상표는 상표국에서 공고하고 원 상표 등록인은 결정 또는 재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내에 상표등록증 원본을 상표국에 반납하여야 한다.

3) 철회의 법률적 효력

상표국의 등록상표에 대한 철회결정에 불복하면 상표평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나 평심위원회에서 내린 상표철회재정은 중국정인 결정이므로 그때부터 법률적 효력을 갖고 있다. 한편, 등록상표철회결정의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등록상표의 철회결정전에 인민법원에 의하여 이미 집행된 상표침해 소송사건의 판결, 공상행정관 리기관에서 집행한 상표침해사건의 처리결정, 이미 이행한 상표 양도계약이나 상표사용권 계약에 대해서는 소급효력을 가지지 않으나 상표등록인의 악의로 인하여 타인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철회된 상표등록인이 배상하여야 한다.

13. 상표의 爭議

상표의 爭의란 『타인의 등록상표가 자기의 등록상표에 저촉된다고 생각하는 상표권자가 타인의 등록상표에 대해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여 재정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1) 쟁의 조건

- 청구인은 반드시 먼저 상표를 등록한 사람이어야 하며 뒤에 등록한 상표권자가 먼저 등록한 상표에 대하여 쟁의를 제출할 수 없다.
- 쟁의의 대상이 되는 선 후 양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이 반드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어야 한다.
- 쟁의의 대상이 되는 선 후 양 등록상표의 문자, 도형 혹은 그 결합이 같거나 유사하여야 한다.
- 청구인은 등록사정되기 전에 이미 이의신청이 있어 재정을 거친 상표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실과 이유로 상표쟁의의 재정을 또 다시 신청할 수 없다.

2) 쟁의 재정

상표평심위원회는 등록상표간의 쟁의 사건을 다루는 법정전문 기구로서 쟁의 신청을 접수하고 이를 재정한다. 상표평심위원회는 상표쟁의재정신청서(商標爭議裁定申請書)를 받은 후 접수한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그 부분을 상대방인 피청구인에게 보내어 지정기한 내에 답변할 것을 요구한다.

상표평심위원회는 쌍방 당사자가 진술한 이유와 사실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법에 따라 재정, 즉 피청구인의 상표등록을 계속 존속시키거나 무효로 하는 결정을 내리고 쟁의 재정결과를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이러한 재정은 모두 종국적인 것으로 재정후 당사자는 그 어떤 이유로도 상급기관에 상고할 수 없으며 인민법원에도 제소하지 못한다.

14. 상표와 관련한 기타 特色點

1) 상표심사시 거절예고(심사관의견통지서)없는 거절사정

우리나라의 경우 거절사정하기 위해서는 심사관의 의견통지서를 통해 거절해야 하는 이유를 명시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심사관의 의견통지서 없이 바로 거절사정 할 경우에는 절차적인 잘못으로 심사관 귀책사유가 된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상표심사관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선등록·선출원 상표와 동일·유사한 경우, 상표법상 금지표시등은 심사관 의견통지서 없이 바로 거절사정을 하게 된다. 다만, 지정상품 및 지정서어비스를 잘못 기재 하거나 포괄명칭일 경우, 또한 출원내용의 경미한 수정이 필요할 경우는 의견통지서를 보내 기한내 보정하게 한다.

따라서, 의견서도 제출해보지 못하고 거절사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하며, 심사관의 거절사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상표평심위원회에 評審을 청구할 수 있다.

2) 상표국의 有料商標 檢索照會

중국상표국은 1989. 12월부터 수수료를 받고 상표검색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검색결과 통보시에는 동일·유사한 상표명단만 통보(상표국 의견은 미기록)하며 검색서비스 수수료는 일반검색일 경우는 60달러, 긴급검색일 경우는(10일내 회신) 100달러이며, 중국상표대리 사무소의 의견이 붙을 경우는 최소한 30달러가 추가된다.

3) 출원 우선 원칙에 사용 우선 원칙을 가미

우리의 경우 같은 날에 2인 이상이 동일·유사한 상표를 출원시 서로 협의토록 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특허청에서 추첨으로 정하여 1인에게만

출원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이런 경우 출원인들 중 누가 먼저 사용했는지 증거를 제출토록하여 가장 먼저 사용한 1인에게만 출원자격을 준다.

다만, 전부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선정한다.

4) 일부상품에 대해 강제등록원칙

우리나라는 어떤 상품이던지 상표사용자가 자기 상표의 등록여부를 스스로 결정한다. 중국의 경우 일반적인 상품의 상표는 자원등록원칙이나, 인체의 건강이나 많은 사람의 이익에 관계되는 약품 및 연초제품은 필히 등록된 상표만 사용해야 하는 강제등록원칙이 적용된다.

5) 상표의 인쇄 관리

우리의 경우 등록받은 상표를 인쇄시 어느 인쇄업체이든지 제작가능 하지만 중국에서는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의(상표인쇄관리방법) 규정에 의해 상표인쇄업체로 지정받은 업체만 상표를 인쇄할 수 있다. (관할 현급 이상의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심사 후 허가를 해줌)

상표 인쇄지정업체는 인쇄의뢰인으로부터 “등록상표 인쇄증명”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미등록상표는 “미등록상표 인쇄의뢰서”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고 상표를 인쇄시 상표인쇄 의뢰인과 인쇄업체를 처벌받게 된다.

6) 등록상표의 표기

우리나라의 경우 등록상표를 사용하는데 있어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등 표기를 하도록 권장하는 입장이나, 중국의 경우 등록상표를 사용할 때 상품에 “注册商標”, “注”, “®”등의 표기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다.

V. 맺는 말

각국의 사람들이 얼굴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듯이 중국의 산업재산권제도도 上記한 바와 같이 우리와 차이점이 있다. 이는 歷史, 文化, 慣習 등의 차이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特色點이므로 우리는 그 자체 그대로 이해하고 대처해나가야 할 것이다.

중국의 제도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중에서는 가장 현대화된 제도와 법규로 평가되며, 改革 開放 經濟體制에 있어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어 중국정부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분야이다. 그러나, 잘 정비 보완된 법규에 비해 실제 집행 운영함에 있어 불비한 점이 있으며, 일부 중국인들의 의식이 따라가지 못해 침해사례가 빈발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좋지 못한 지목을 받는 부분도 있다.

최근, 韓 中 양국간 산업재산권 관련기관, 단체들간의 활발한 교류와 함께 특허, 상표 사건의 급증으로 인한 변리업무관계자들의 실무경험 축적등으로 향후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에 유학가 있는 3명의 특허청 직원들이 돌아오면 중국전문가로 자리잡아 우리기업의 지적권리가 중국내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이다.

중국은 이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웃나라이며 중국을 알지 못하고는 21세기를 맞이하기 어려울 정도로 각 분야에 있어 밀접한 관계의 나라로 바뀌었다.

本 小考를 통해 특허가족들이 가까이 다가온 중국과 중국산업재산권 제도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여 우리기업과 관련 업계의 실무에 접목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발특9905